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적 사안 하나 하나는 현재적 국민 관심사다. 법정에 선 주체들의 토막 난 발언도 기사화되며, 각각의 언론사들이 써내는 파편화된 정보들을 조합하면 하나의 사실관계가 추론되기도 한다. ‘판사 신상털기’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보도는 이 사건과 관련된 술한 인물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를 국민들이 그만큼 눈여겨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관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여론재판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장철준 교수의 “법관은 ‘공인’ (public figure)이며, 그간의 사법성역을 깨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제 발제는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 이전에 하나의 시민으로서도 동의한다. 특히 사법부의 자성을 권하며, 현 사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흔히 말하는 ‘적절한 규제’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언론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사법부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논증은 실체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결이 같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

다음은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현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1. 미네르바 사건과 적폐 판사 5적

판사들의 이른바 ‘신상털이’와 관련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1월 12일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¹⁾과 관련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상에 유포되자, 검찰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힌다. 검찰이 영장판사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수사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었고, 해당 기사는 거의 모든 매체가 받아서 언론을 장식했다. 그러나 당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영장판사의 신상이란 인터넷 ‘아고라’에 한 네티즌이 올린, 김 판사의 출신학교와 김 판사가 내린 판결 몇 가지가 전부였다. 인터넷에 ‘김용상 판사’라고 치면 나오는 정보들을 모아냈다고 해서 ‘신상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판사 신상털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정치권에서는 ‘여론재판’을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각 언론들은 기사 뿐 아니라 사설까지 활용해 ‘사법 위기’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7년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물들에 대한 판사들의 영장기각 - 이번에는 발부가 아니라 기각이다 - 이 도마에 오르며 ‘적폐판사 5적’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들의 신상을 담은 뉴스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8년 전 같으

1)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을 게시해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1978년)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면 검찰에서 나서서 수사를 했을 만한 사안이다. 이른바 ‘털린’ 신상의 범위나 내용의 구체성이 김용상 전 판사 때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 대해 입도 병긔하지 않는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차이는 무엇일까. 당시에 이 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면 아마 내용은 정반대가 아니었을까?

2. 소위 ‘신상털이’의 주체는 누구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영장전담판사들의 학력과 과거 판결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언론사가 아니었다. 굳이 따지자면 인터넷에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뉴비씨(NewBC)’라는 정치 커뮤니티에서 한 시민기자가 2017년 9월 10일 ‘[주장] 적폐에 부역하는 판사 5적’²⁾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여기에 생성된 카드뉴스 이미지가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확대재생산된 것이다.

이후 일명 ‘우병우 사단’ 등에 대한 영장기각에 반발하는 여론을 기사화한 사례는 박범계, 안민석, 이재정 등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영장판사들의 신상을 언론에서 적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제자가 서문에 짚은 바대로, 언론은 잘못된 보도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만큼 영장기각 판사들의, 이른바 ‘신상’을 무리하게 적시하지 않는 관행을 갖고 있다. 판사들의 신상털이에 대해 기사화한 언론사는 TV조선으로 9월 8일 ‘영장기각 판사들의 도 넘은 신상털이’³⁾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작성

2) 뉴비씨 ‘적폐에 부역하는 판사 5적’ 카드 형식 시민 기사(링크 2017. 9. 10.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comml&wr_id=4277)

3) TV조선 ‘도 넘은 판사 신상털이’ (2017. 9. 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90119.html)

했는데, 내용은 역시 정치인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수준이었다.

발단은 인터넷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인터넷은 뉴스전달과 의제설정, 여론 확산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몇몇 인터넷 게시판 - 일간베스트나 보배드림 등 다수의 적극적인 사용자가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게시판 - 은 여론 형성 공간 뿐 아니라 이른바 ‘신상털기’ 공간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더구나 쌍방적이고 익명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으로 인해 언론에 주어지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도 및 수준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언론의 ‘사법보도’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법평설’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 볼 것인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문제가 되는 담화 생산 주체에 대한 분명한 가름이 필요해 보인다.

3. ‘신상’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얼마 전 광에서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한국인 법조인 부부의 신상이 그야말로 ‘털렸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광 현지에서 경찰이 배포한 ‘머그샷’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면서 가능했다. ‘머그샷’에 나온 이들 부부의 얼굴과 이름을 인터넷에 치면 출신 학교와 직장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는 구조였다.

최근 문제가 된 영장판사들의 신상정보라는 것은 어떠한가? 역시 인터넷에서 몇 번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에 대해

‘신상을 털었다’ 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과연 ‘신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법조인의 ‘신상’이란 연예인의 신상 혹은 선출직 공직자의 신상, 범죄자의 신상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가능한 것인가?

4. 법조계의 투명성 확보와 언론계의 노력

법원을 향한 시민 불신의 이유에는 투명성에 대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장철준 교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 실질적이다. 특히 영장 판사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외에는 마땅한 법리가 공개된 바가 없다. 영장판결 뿐 아니라 하급심 판결문을 입수하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지적 역시 깊이 공감된다.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가장 정보공개에 더딘 곳이 법조계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역시 법원의 정보공개에 실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는 국민배심원제가 도입된 이후의 데이터를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중이다. 그런데 각각의 사건에서 배심원 몇 명이 결정을 내렸는지, 선정 요건, 응답률, 지불된 보수, 해당 사건의 판결문(개인정보 삭제)을 요청했으나 해당 정보가 없다는 답신만을 받았을 뿐이다. 국민재판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노동권 관련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 도서관에서 일일이 키워드를 넣어 판결문 목록을 만들고 - 대법원 도서관 사용 시간도, 요건도 너무 까다롭다! - 이를 검색해서 찾아내야 한다. 전문보도를 하는 데이터저널리즘팀도 난색을 표하는 판결문 법리를 일반 기자들이 하루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를 보통의 일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히 고문 수준이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문은 이미 전자판결로 바뀐 지 오래다.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일반인들에게 키워드 검색을 허가하고, 법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투명함과 피드백은 데이터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언론계의 노력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미국 저널리즘 스쿨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libel’이다. “How about libel?”은 기자들이 모든 기사를 쓸 때 한 번 짚은 스스로에게 혹은 데스크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가르친다. 여기에서의 명예훼손 여부는 그러나, 기사를 검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만큼 진실 추구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 탄탄한 소스를 갖췄는지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질문이다.

새로운 저널리즘으로 인식되는 데이터저널리즘이나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영장기각과 관련된 사법보도에 있어 이른바 ‘양승태 키즈’에 대한 언론보도가 결국 팩트체크로 귀결된 것은 올바른 저널리즘의 사례라고 본다. 팩트체크 전문 인터넷 언론 ‘더팩트’⁴⁾는 이른바 영장기각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갈이한 영장판사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작성해 논란을 잠재웠다. SBS의 데이터저널리즘팀인 ‘마부작침’

4) 더팩트 “[팩트체크] 법원 검찰 영장충돌, 양승태 키즈가 원인이라고?” (2017. 9. 12. <http://news.tf.co.kr/read/ptoday/1701911.htm>)

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장 인사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사⁵⁾를 통해
신임 검사장들의 이름과 출신지,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하면서 데이터로
입증하는 ‘올바른 법조인 신상공개’ 보도를 보여줬다.

5. 인터넷 커뮤니티와 ‘표현의 자유’

과도한 신상털이나 악의적 게시물의 발원지로 지적되는 인터넷 공간
에 대한 규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금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규제하는 패러다
임은 숙고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필터링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인 방
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언론의
플랫폼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과의 융합으로 선을 긋기 어
려워진 현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언론보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
치고 언론보도는 다시금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실시간으
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자체에 거부감이 일수도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완전무결한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
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서 댓글공작을 하고, 나체사진을 합성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확대해서 퍼뜨렸다는 것을 상기하면, 국가권력이 보란
듯이 남용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량살상무기와 진배없다. 익명성에
의한 여론조작이나 패거리 여론, 여론 재판 등은 기존 언론과 동일선상

5) SBS 마부작침 문재인정부 ‘조직논리’ 깬 검사장 인사...정치검사 숨아내기 시작?(2017. 7. 2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9770&plink=ORI&cooper=NAVER)

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문제다. 가짜뉴스의 발원지와 확대, 재생산되는 근거지로 지목되는 혐오 사이트 등 특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언론보도와는 결을 달리할 문제다.

6. 영화 ‘공범자’ 속 신상공개

MBC 피디 출신 최승호 감독의 문제작 ‘공범자’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MBC 피디수첩에서 방영한 ‘광우병 파문’이 문제가 되어 피디수첩 담당 피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승호는 당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디수첩 담당 피디들을 쫓던 검사들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한다.

“왜 기자나 피디들은 무슨 기사를 썼다,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박아서 보여주는데, 왜 우리는 어떤 검사가 누구를 구속했고, 누구를 기소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로 했다. 피디수첩을 구속하고, 기소한 검사들 이름을...” . 검은 바탕의 화면에는 그들을 구속하고 기소한 검사들의 이름이 흰 글자로 떠오른다.

시민들이 원하는 신상은 그 정도의 신상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권력을 사용하도록, 견제가 가능한 정도, 그 정도의 신상 공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견제가 되지 않는 공직자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초록불일 때 건널목을 건너는 정직한 국민으로 살고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법 공개. 딱 그 선이다.